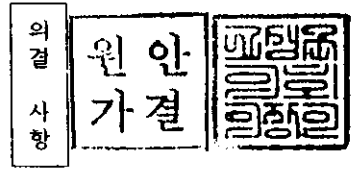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41 호
의결연월일	1995. 4 7. (제 32 회)



고 성 군 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 출 연 월 일	1995. 3. 2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변	안 호	271
--------	--------	-----

제출연월일 : 1995. 3. 27.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94. 12. 22., 법률 제4794호)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개인 균동할 주민세의 세율을 군지역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 나.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변경함(안 제31조)
- 다. 주민세(균동할)와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종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75조제1항 및 동법 제250조제3항에서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16조 및 제61조).
- 라. 종전 지입제로 운영되던 건설기계가 군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24조).
- 마.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제5장으로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이와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 제19조제1항,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
- 바. 종전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44조에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64조).

3. 참고사항

세정13400-1436('94. 12. 21.)호 및 세정 13430-1478('94. 12. 29)호 및 세정13400-197('95. 2. 15.)호의 「군세조례 신규조문 대비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동조 제1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으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한다. 동조제2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를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제3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 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8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안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500,000원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	200,000원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법 제184조의3"을 "법 제184조"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을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02조제1항"을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제32조"를 "제31조"로 한다.

제49조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234조의12"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3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및 법 제290조제1항"으로, "비과세"를 각각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 ----- <u>기한</u> ----- ----- ----- ----- <u>기한이 만료되기 전</u> ----- ----- ② ----- <u>기한</u> ----- ----- <u>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u> <u>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u> ----- ----- <u>연장할 수 있다.</u> -----</p> <p>③ ----- <u>기한의</u> ----- ----- ----- <u>기한의</u> ----- ----- ----- <u>연장된 기한</u> <u>내에</u> ----- ----- ----- <u>다시</u> -----</p>

현행	개정안												
<p>④ (생략)</p> <p>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p> <p>제15조 (세율) ① 균동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인 : 800원</p> <p>2. 법인</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신고납부기한의 ----- --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p> <p>제15조 (세율) ----- -----</p> <p>1. 개인 : 1,000원</p> <p>2. 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td> <td>원 500,000</td> </tr> <tr> <td>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는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td> <td>원 35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원 500,000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는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원 35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과세기준일 ----- 세기준일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법인</td> <td>원 500,000</td> </tr> <tr> <td>-----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td> <td>원 35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세율	----- (과세기준일 ----- 세기준일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법인	원 500,000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	원 350,000
구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원 500,000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는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원 350,000												
구분	세율												
----- (과세기준일 ----- 세기준일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법인	원 500,000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	원 350,000												

현행		개정안	
<p>는 사업소를 둔 법인</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 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 억원이하인 법인으로 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 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p>	<p>원 200,000</p>	<p>법인</p> <p>원 200,000</p> <p>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 무소 등의 법인과</p> <p>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법인</p>	<p>원 200,000</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 억원초과 50억원이하 법 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초과 30억원이하 법 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 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p>	<p>원 100,000</p>	<p>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 무소 등의 법인과</p> <p>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법인</p>	<p>원 100,000</p>
<p>기타 법인</p>	<p>50,000원</p>	<p>기타 법인</p>	<p>50,000원</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6조 (납기등)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p> <p>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p>	<p>(삭제)</p>
<p>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법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p> <p>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p>	<p>제17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 -----</p> <p>-----</p> <p>-----</p> <p>-----</p> <p>-----</p>
<p>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6.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p> <p>-----</p> <p>-----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hr/> <p>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hr/> <p>제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hr/>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hr/> <p>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p> <hr/> <p>(삭 제)</p>
<p>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연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p>	<p>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 -----</p> <hr/> <p>-----</p> <hr/> <p>-----</p> <hr/> <p>-----</p> <hr/> <p>-----</p>

현행	개정안
<p>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p>
<p>제32조 (중군자동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중군·동원 또는 전산·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33조 (감면결정통지)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3조 (감면결정통지) ----- 제31조 ----- ----- -----</p>
<p>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p>

현행	개정안
<p>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p>① (생략)</p> <p>② <u>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u>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p> <p>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감응할 수 있다.</p> <p>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u>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u>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자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p>	<p>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234조의12</u> ----- <u>비과세</u> -----</p> <p>-----</p> <p>-----</p> <p>-----</p> <p>-----</p> <p>-----</p> <p>-----</p> <p>제5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p> <p>-----</p> <p>----- <u>비과세를</u> -----</p> <p>-----</p> <p>-----</p> <p>-----</p> <p>-----</p> <p>-----</p> <p>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u>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및 법 제290조제1항</u> ----- <u>비과세 또는 감면</u> ----- <u>비과세 또는 감면</u> -----</p> <p>-----</p> <p>-----</p>

현행	개정안
<p>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1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을</u>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p> <p>-----</p> <p>-- <u>비과세</u> -----</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64조(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제1항제3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지역</u>"이라 함은 <u>군내 전읍면을 말한다.</u></p>	<p>(삭제)</p>
<p><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p>

현 행	개 정 안
	<p>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